

제152회 해양경찰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결과

□ 일시·장소: '26. 8. 6.(목) 14:00 ~ 15:00 / 해양경찰위원회 회의실

□ 참 석 자

○ 해양경찰위원회 : 김재봉 위원장 등 해양경찰위원 7명(온라인 출석)

○ 해 양 경 찰 청 : 기획조정관, 안건 소관 국·과장, 기획재정담당관 등 6명

□ 개최 결과: 심의·의결 1건(수정의결 1), 보고 1건

【심의·의결 1건】

연번	형식	안 건 명	주 요 내 용	심의 결과	부서												
1	대령	「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안	• 「연안사고예방법」 개정*(‘27.5.13. 시행)에 따른 시행령 별표 「과태료 부과기준」 정비 * 연안해역 출입통제장소 무단 출입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(100만원→300만원) <table><tr><th>과태료</th><th>현행</th><th>개 정</th></tr><tr><td>1차 위반</td><td>20만원</td><td>50만원</td></tr><tr><td>2차 위반</td><td>50만원</td><td>100만원</td></tr><tr><td>3차 이상 위반</td><td>100만원</td><td>300만원</td></tr></table> → 수정사항 모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[별표] 과태료 부과기준의 근거법조문을 변경 (법 제25조제1항제1호 → 법 제25조제1항제1의2호 등)	과태료	현행	개 정	1차 위반	20만원	50만원	2차 위반	50만원	100만원	3차 이상 위반	100만원	300만원	수정 의결	해양 안전
과태료	현행	개 정															
1차 위반	20만원	50만원															
2차 위반	50만원	100만원															
3차 이상 위반	100만원	300만원															

【보고 1건】

연번	안 건 명	부서
1	8월 주요 업무보고	기획재정

첨부1

수정의결 사항

□ 「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안

상정안					수정의결				
[별표] 과태료 부과기준(제14조 관련) 2. 개별기준					[별표] 과태료 부과기준(제14조 관련) 2. 개별기준				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		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	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나. 법 제 11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에 응하지 않은 경우	법 제 25조제 1항 제1호	50만원	100만원	300만원	나. 법 제 11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에 응하지 않은 경우	법 제 25조제 1항 제1의2호	50만원	100만원	300만원
바. 법 제 12조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 25조제 2항 제2호	20만원			바. 법 제 12조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 25조제 2항 제1호	20만원		
아.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 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 등의 가입 정보를 알리지 않거나 거짓의 정보를 알린 경우	법 제 25조제 2항 제3호	30만원			아.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 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 등의 가입 정보를 알리지 않거나 거짓의 정보를 알린 경우	법 제 25조제 2항 제2호	30만원		
수정사유 모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[별표]의 과태료 부과기준의 근거법조문을 정비									

□ 8월 주요업무보고

- 형사사법 환경 변화 속에서 ‘수사심의제도’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.
경찰청과 협력하여 법률 근거 마련을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림.
- 현재 TF를 구성하여 경찰청과 협력하여 논의 중임. 세부 추진사항은 추후 별도로 보고드리겠음.
- ‘퇴직공무원 해안방제기술컨설팅’ 관련 사업 내용 및 퇴직공무원의 역할은?
 - 과거 외부 용역을 통해 구축한 전국 해안의 방제정보는 해양 환경 변화에 따라 주기적인 자료 갱신이 필요함. 해당 사업은 해안 방제정보를 반복적인 대규모 용역보다는 해당 지역을 잘 아는 퇴직 공무원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갱신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임. 퇴직공무원의 주요 임무는 해안 현장을 조사하고, 사진을 촬영하여 해안 방제 DB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며, 이 자료는 해양오염 사고 발생 시 방제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됨.
 - 운영 방식은 퇴직공무원 개인별로 매월 일정량의 조사 실적을 수행하면 수당이 지급됨. 기본 임기는 3년이며, 임기 종료 후에는 연임하거나 신규 인원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임.

- 방제자료의 연속성 확보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되며, 실제 현장에서 실효성있게 운영되길 기대함.

□ 「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안

○ 출입통제 대상이 되는 테트라포드 및 출입통제 표시 위치에 대한 설명 필요.

- 모든 테트라포드를 통제하는 것은 아니며, 사망사고가 발생했거나 위험성이 높은 장소만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음. 출입통제 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방파제 입구 등에 그림 등 안내판을 설치하여 일반인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음.
- 관할하는 관청에서 통제에 필요한 정보를 게시해놓았고, 관광지의 경우에는 출입 가능한 구역과 금지구역을 함께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음.
- 테트라포드 출입통제구역은 현재 10개소가 지정되어 있음.
- 실제 안내판만으로 무단 출입을 막는데 한계가 있을 것임. 많은 사람들이 경고를 무시하고 들어가 사고가 발생하는 만큼,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어보임.